

# 모델 19

##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

### 01 |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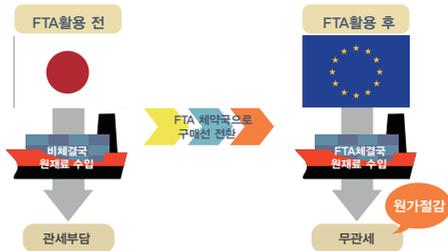
- 국내에 대체 원재료가 없거나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해야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

### 02 | 비즈니스 모델

-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(관세有)를 FTA 체결국 재료(관세無)로 구매선을 전환
  - FTA 체약국에서 수입할 경우, 협정세율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곧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
  - 또한 FTA 체약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보다 용이해짐



####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



### 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모든 산업분야 및 FTA
- ※ (유의사항) 원재료를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, 이에 따른 비용(운송비 등)과 협정관세 혜택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